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 9. 28.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 공고(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9, 1331-11 (2필지)
· 건축면적 : 2,671.36㎡
· 연 면 적 : 5,927.71㎡(총 2개동) (연구동 : 5,137.49㎡ / 연구지원동 : 790.22㎡)
· 층 수 : 지상 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예연구실, 보존처리실, 유물정리실 등)
· 사 업 비 : 199.9억원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항 목	해당공종	횟수	비 고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1회	2회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1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회	2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8,000,000원(부가세 별도)

라.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 ~ 25조, 제27조 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공사 및 감리사와 협의하도록 한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 가. 신청자격 : 문화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 문화재청 공고 제2022-242호로 공개

나. 결정방법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 선정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 X 60%
수행가격	40점	평점 = 평가점수 X 40%
합 계	100점	

-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2. 9. 28. (수) ~ 10. 6. (목)

-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 코로나 확산방지 및 기관이전에 따른 접수혼잡 방지를 위해 전자우편접수를 진행

※ 담당자 전자우편(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정수영 / kater01@korea.kr)으로 제출서류를 다음 전자우편 제목서식에 맞게 송부

- 신청제목양식 : [안전신청]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신청(업체명)

-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 1)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 2)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 3)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 4) [서식4] 서약서 1부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2. 10. 10. (월) (1순위)개별통보(예정)

※ 기관사정상 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제 출 : 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 신청서류원본 및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

☞ 2022. 10. 14. (금)까지 현장제출

☞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경복궁발굴사무실

7.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바.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032-930-0023, 담당자 정수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이전으로 **2022. 10. 4. (월)부터 유선상 질의가 어려우므로** 해당 질의내용 및 유선가능 연락처를 질의제목양식에 맞게 송부

- 질의제목양식 : **[안전질의] 수도권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질의(업체명)**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1. 보유기술인	35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최대 35점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5	·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대 3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1건 이상</td> <td>없음</td> </tr> <tr>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없음	35	30	25	2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없음						
35	30	25	20									
3.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 A- 이상		20점								
		· BBB- 이상		18점								
		· B- 이상		16점								
		· CCC+이하		14점								
		· 미제출		0점								
4. 입찰제재 여부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1점×개월) ※ 감점		1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안전관리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제안가격	100	· 예정가격 1번째 : 100점		
		· 예정가격 2번째 : 95점		
		· 예정가격 3번째 : 90점		
		· 예정가격 4번째 : 85점		
		· 예정가격 5번째 : 80점		
		· 예정가격 6번째 : 75점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5점, B기관 95점, D기관 85점
- 예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	60점	평점=평가점수 × 60/100
제안가격	40점	평점=평가점수 × 40/100
합계	100점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종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1. 보유기술인	35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최대 35점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5	·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대 3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5건 이상</td> <td style="width: 25%;">5건 미만 3건 이상</td> <td style="width: 25%;">3건 미만 1건 이상</td> <td style="width: 25%;">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없음	35	30	25	2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없음							
35	30	25	20										
3.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 A- 이상			20점								
		· BBB- 이상			18점								
		· B- 이상			16점								
		· CCC+ 이하			14점								
		· 미제출			0점								
4. 입찰제재 여부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1점×개월) ※ 감점			1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안전관리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귀하

